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7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2023.7.25.)를 거쳐,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7항에 따라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지정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나. 지역주변 보탬이 되는 가로경관으로 재정비하고 열린 커뮤니티 및 동선체계로 공공성을 회복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범 위	면적(㎡)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 번지 일대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41,539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주 용 도	위 치	면적(㎡)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 번지 일대	41,539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 45,767㎡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명칭	주용도	대지면적(㎡)	높이 (최고층수)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1,539	124.95m이하/ 35층이하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신길우성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 완화인정	- 특례적용 시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된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창출 -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배치로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과의 조화를 이룸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3-96호)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계획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방시설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키즈&맘스카페,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기타 주민공동시설 (총 약 5,300㎡)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8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